



정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사외이사 및 지주회사 제도와 함께 도입되었어야...

▶ Analyst 엄수진 sujineom@hanwha.com 3772 7407

[개정 Timeline]

2024.11.19	이정문 의원 등 18인 개정안 제안
2024.11.20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4.11.2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5.01.22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5.02.24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5.02.27	국회 본회의 상정 유예
2025.03.13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통과
2025.04.01	정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정부, 4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주도 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국회로 환송되게 되었는데, 국회에서 재의 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가결된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

-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므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보여짐
-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음
-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음
- 자본시장법 개정을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상장법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Comment

IMF 직후 국내 기업과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배구조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대표적으로 1998년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1999년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들 수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도 이 당시에 함께 도입되었다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사외이사 및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 후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명문화되지 않은 법적 환경에서 단순히 사외이사 인원 수와 비중,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등 표면적인 법적 의무를 충족하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IMF 직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도입되어 현 시점 시행된 지 20년이 넘는 상황이었다면 지주회사 저평가 현상도 (현재의 실태보다) 훨씬 완화되었을 것이다.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